

ACI 카드뉴스

2025~2027년 외부감사에 적용될 표준감사시간 확정

December 12, 2024



2025~2027년 외부감사에 적용될 표준감사시간 확정

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일반적·평균적 감사시간을 산업별·기업규모별로 정하는 기준입니다.

외부감사법은 3년마다 감사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심의를 거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습니다. (*)

본 카드뉴스에서는
금번 표준감사시간 주요 개정사항 등을 살펴보겠습니다.

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|
| 1 | 표준감사시간이란? |
| 2 | 개별 기업의 표준감사시간 산정순서 |
| 3 | 표준감사시간 주요 개정사항 |

(*): 금융위원회, 2025~2027년 외부감사에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하였습니다, 2024.12.5

표준감사시간이란?

“표준감사시간”이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절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감사시간을 말함

-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업무(*)와 분·반기검토를 수행하는 담당이사, 등록공인회계사, 수습공인회계사, 품질관리검토자, 전산감사·세무·가치평가 등 회계법인 내부 전문가의 투입시간을 포함

관련 법령

외부감사법 제16조의2(표준감사시간) ①

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다.

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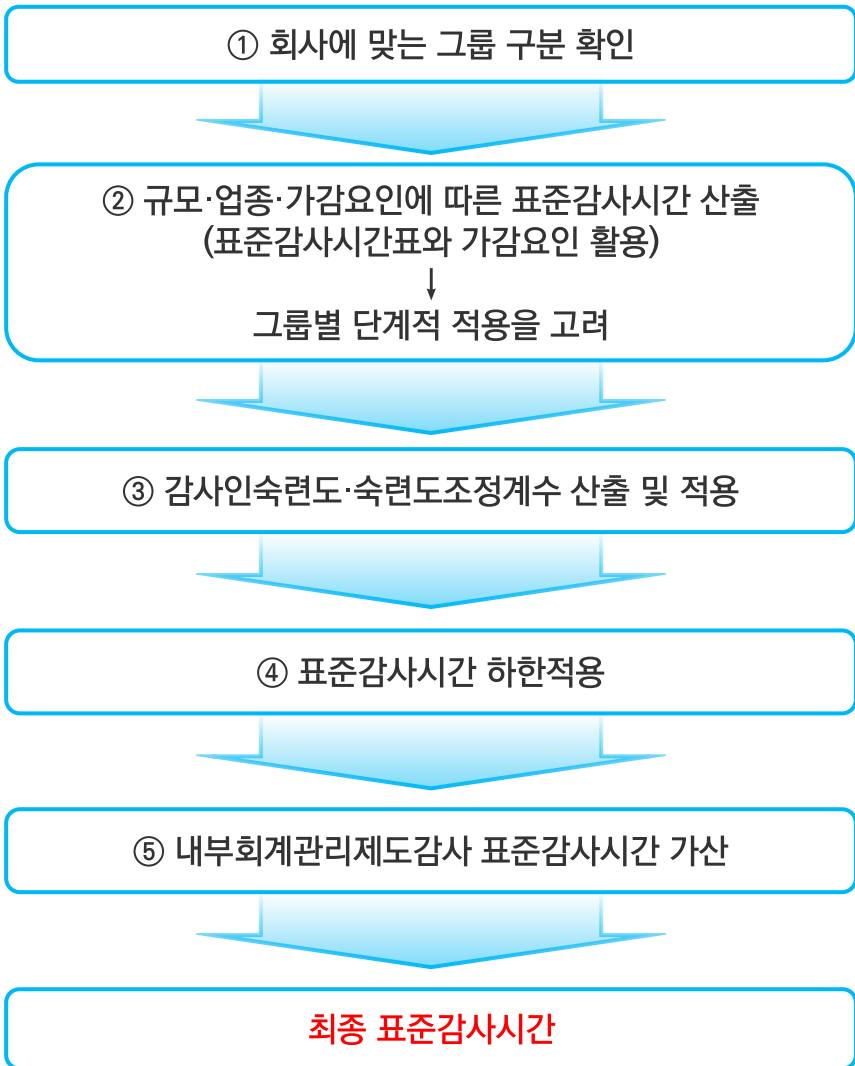
감사위원회 참고 사항

“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정 및 평가 시 투입인력 및 투입시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표준감사시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”

(*)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또는 감사(영문감사 제외), 업무 수임검토 등 부수업무 포함

참고: 개별 기업의 표준감사시간 산정순서(*)

표준감사시간 상세 지침에 따르면 개별 기업의 표준감사시간은 하기의 흐름에 따라 산정할 수 있음



(*): 한국공인회계사회, 표준감사시간 상세 지침, 2024.12.4

표준감사시간 주요 개정사항(1)

1. 중견·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한 적용면제·부분적용 연장

- ✓ 자산총액 2백억원 미만 중소회사는 표준감사시간을 2027년까지 적용 유예
- ✓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 및 비상장사 등에 적용되는 적용률도 추가로 인상하지 않고, 2024년과 동일하게 2025년까지 연장
 - 단, 2026년 이후 부분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2025년 하반기에 심의하기로 함

| 구분 | | 2021~2024년 | 2025~2027년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상장사 | 자산 2조원 이상 | 시행 (100% 적용) | 시행 (100% 적용) |
| | 자산 2조원 미만 | 시행 (90~95% 적용) | 부분적용 연장 (~2025년) |
| 비상장사 | 자산 2조원 이상 | 시행 (100% 적용) | 시행 (100% 적용) |
| | 자산 1천억~2조원 | 시행 (90% 적용) | 부분적용 연장 (~2025년) |
| | 자산 2백억~1천억 | 시행 (70~80% 적용) | 부분적용 연장 (~2025년) |
| | 자산 2백억 미만 | 유예 | 유예 연장 (~2027년) |

2. 기업의 지배구조·회계투명성 개선노력, 기업별 구체적 특성 등 고려

- ✓ 아래의 경우 표준감사시간을 낮추어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
 - 「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,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·감독하는 등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」
 - 「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거나, 감사 과정에서 디지털 감사기술을 활용하는 등 감사효율성이 제고되는 경우」
- ✓ 기업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산정과정 보완

표준감사시간 주요 개정사항(2)

3. 관계법령 정비사항 반영

- ✓ 외부감사법령 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부담이 완화된 부분이 표준감사시간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함

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 내역

| 구분 | 종전 | 변경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비상장사 | 자산 1천억원 이상 : 검토 자산 1천억원 미만 : 면제 | 자산 5천억원 ^(*) 이상 : 검토 자산 5천억원 ^(*) 미만 : 면제 |
| 상장사 | 규모 상관없이 모두 외부감사 | 자산 1천억원 미만 외부감사 면제 (대신 '검토' 의무 유지) |

(*)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자산 1천억원 이상

표준감사시간 제 5조 (표준감사시간의 산정)

④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검사가 수행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산정된 표준감사시간에 회사 개별특성 및 고유환경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표준감사시간을 가산한다.

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표준감사시간은 자회사수와 소재지, 내부거래의 규모와 성격 등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 미치는 요인을 추가로 고려하여 산정한다.